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2021년 2월 17일
-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별표 6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에 기존의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동경비가 추가되었음.
 - 이를 따라 안 제2조제1호에 의정운영공동경비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03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의자 : 정선희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안 제2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
경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업무추진비”란 영등포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u>-----.</p> <p>2.·3. (현행과 같음)</p>